

#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



## 대만, 식품첨가물 수입 검역 대상에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포함



市场监管总局关于调整特殊医学用途  
配方食品产品通用名称的公告

### 대만, '아산화질소' 식품첨가물로 분류, 관련 식품 수입 관리 규정 강화

지난 6월 19일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이하 식약서)는 식품용 '아산화질소(Nitrous Oxide)'를 식품첨가물로 분류한 '수입규정 「508」 제품 분류표 개정'을 공고함

대만 수입규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향료 포함) 용도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역법(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 규정에 따라 식약서에 식품 수입 검역을 신청해야 함. 따라서 개정 규정 상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아산화질소도 식품 수입 검역을 신청해야 함

수입 검역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음. 수출입 생산자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된 수입자는 거래 상대방이 생산 작업장에 대한 등기 문서를 보유한 경우, 아산화질소 수입 시 대만 경제부(經濟部) 국제무역국(國際貿易局)에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해당 제품이 주관기관의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으며, 개정된 수입규정 「508」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대만, 2019년부터 아산화질소 식품첨가물 분류 준비

이번 수입규정 「508」 개정은 2019년 11월 7일 식약서가 공고한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표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수정안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2019년 5월, 식약서는 아산화질소가 식품첨가물 관리대상이 되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및 제한량과 규격 표준》에 규범화됨에 따라, 「식품용 아산화질소 위생 표준 관련 규정(食品用一氧化二氮衛生標準 (以下簡稱本標準))」을 폐지한다고 예고함. 해당 《표준》의 경우 "아산화질소는 각종 식품에서 실제 수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식품용 아산화질소의 사용을 규제함

#### 출처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식품약품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 修正「輸入規定」508,貨品分類號列表, 2020.06.19